



**중국 W/B 운임공표제 시행 안내**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, 평소 당사의 서비스를 애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2.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인 해운시장의 장기불황 국면에서 선사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운업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공표제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폐사는 상기 법률에 의거 지난 5월 11일 제로(0) 및 마이너스(-) 해상운임 시정 조치명령을 통지 받았습니다.
3. 이에 폐사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하기와 같이 공표운임을 알려드리며 안정된 운송서비스 제고 및 양질의 해상운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**한/중 항로 공표요율**

1. 시행일 : 2016년 6월 1일 출항분
2. 대상 : 한국발 중국착 컨테이너 화물
3. 공표요율

단위 : US \$/TEU

	부산	울산	광양	인천	평택	경인
Shanghai	30	80	50	50	50	-
Ningbo	30	80	50	-	-	-
Xingang	30	80	50	-	100	-
Dalian	30	80	50	-	80	-
Qingdao	30	80	50	-	50	50
Weihai	-	-	-	150	50	-
Lianyungang	30	-	-	-	-	-
Nanjing	100	-	100	-	-	-
Zhangjiagang	100	-	100	-	-	-
Dafeng	100	-	-	-	150	-

주) B.THC외 부대비용 별도